

대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권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1년 12월 5일
- 회부일자 : 2001년 12월 6일

3. 제안이유

-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수립(안)은 99년 7월 발표된 정부의 「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」에 따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건설교통부와 충청남·북도, 대전광역시가 공동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목표연도 : 2020년
- 공간적 범위 : 4,633.87km<sup>2</sup>(2000. 10. 9 대전광역도시권 지정)

시·도별	행 정 구 역	면 적(km <sup>2</sup> )
합 계	3광역 시도 2시 6군	4,633.87
충청남도	공주시·논산시·금산군·연기군 전역	2,493.38
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 전역	539.79
충청북도	옥천군·영동군전역, 청원군·보은군 일부	1,600.70

- 계획인구 : 2,700천명(현재 1,948천명)
- 내용적 범위
  -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 구상
  - 광역도시권의 부문별 계획  
(광역토지이용, 녹지 및 경관관리, 광역교통, 방재, 환경보존 등)
  - 생활권 설정 및 정비계획
  -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

## 5. 검토의견

- 대전권 광역도시계획(안)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다 발전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
- 본 대전권 광역도시계획(안)을 검토한 바

‘99. 7. 2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발표시 G/B면적의 30~40%가 해제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7.7% 정도가 해제되어 이해관련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상이 좋은 임야만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시키고, 나머지 대지 및 부락 주변의 전·답은 가능한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

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건축물의 건폐율이 60%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건폐율을 20%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가중

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현행대로 60%로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
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자연녹지가 보전녹지로 변경될 경우 보전녹지에는 공동주택 건축, 일반음식점 등 각종 건축에 대한 제한이 따르게 되므로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도록 해야될 것으로 사료됨.